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 16

(비공식번역본)

규제비검역병해충: 개념 및 적용

Regulated Non-Quarantine Pests : Concept and Application

2002

FAO/IPPC 사무국

차 례

서 론
적용범위
참고문헌
용어정의 및 약어
요건의 개요

일반요건

1. 배경

2. 규제비검역병해충에 관한 IPPC 협정의 조항

3. 규제비검역병해충과 다른 병해충의 비교
3.1 검역병해충과의 비교
3.1.1 병해충 발생상태
3.1.2 경로
3.1.3 경제적 영향
3.1.4 공적방제
3.2 비규제병해충과의 비교

4. 규제비검역병해충을 정의하는 기준
4.1 재식용식물
4.2 의도된 사용목적
4.3 이러한 식물
4.4 경제적으로 허용할 수 영향
4.5 규제되는

5. 관련 원칙 및 의무
5.1 기술적 정당성
5.2 위험평가
5.3 위험관리, 최소한의 영향 및 동등성
5.4 비차별
5.5 투명성

6. 적용
6.1 기주-병해충 관계
6.2 증명 프로그램
6.3 허용치
6.4 불이행

승 인

식물위생조치에 관한 국제기준은 FAO의 식물검역에 대한 정책 및 기술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IPPC 사무국에 의해 작성된다. 이 프로그램은 무역을 촉진하고, 무역에 장애가 되는 부당한 조치의 사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FAO 회원국 및 다른 관련단체들이 이러한 기준, 지침 및 권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 기준은 2002년 3월 제 4차 ICPM(잠정식물위생조치위원회)에서 승인되었다.

FAO의장 Jacques Diouf

적 용

식물위생조치에 관한 국제기준(ISPMs)은 IPPC 체약국 및 IPPC 체약국이 아닌 FAO 회원국들에 의해 잠정식물위생조치위원회에서 채택된다. ISPMs은 SPS 협정에 근거하여 WTO 회원국들이 적용하는 식물위생조치의 근거가 되는 기준, 지침 및 권고이다. IPPC 체약국이 아닌 국가들도 이러한 기준을 준수할 것이 권고된다.

재검토 및 개정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은 정기적으로 재검토 및 개정된다. 이 기준의 차기 검토일자는 2004년 또는 식물위생조치위원회에서 정하는 날짜이다.

기준은 필요시 갱신 및 재발행 될 것이다. Standard holder는 현재 사용되는 edition에 대해 보증해야 한다.

배 포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은 IPPC 사무국에 의해 모든 FAO 회원국 및 지역식물보호기구의 집행(기술)국에 배포된다.

- 아·태 식물보호위원회(APPPC)
- 카리브 식물보호위원회(CPPC)
- 남아메리카 식물보호위원회(COSAVE)
- 안데스 위원회(CA)
- 유럽·지중해 식물보호기구(EPPO)
- 아프리카 식물보호협의회(IAPSC)
- 북미 식물보호기구(NAPPO)
- 중남미 식물보호기구(OIRSA)
- 태평양 식물보호기구(PPPO)

규제비검역병해충: 개념 및 적용

서 론

적용 범위

본 기준에서는 규제비검역병해충의 개념에 대해 기술하고, 그 특징을 규명하고 있다. 또한 규제시스템과 관련되는 요소 및 규제비검역병해충 개념의 실질적 적용에 대해 기술한다.

참고문헌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1994, WTO
특정지역에서의 병해충 발생상태 결정. 1998. ISPM Pub. No.8, FAO
식물 질병에 의한 손실의 유형. 1967. FAO symposium on crop losses.
식물위생용어집. 1999. ISPM Pub. No.5, FAO
용어집 부속서1.: 규제병해충에 대한 공적방제 개념의 적용 및 해석. 2001. ISPM Pub. No. 5, FAO
병해충 위험분석 지침. 1996. ISPM Pub. No.2, FAO
감시에 관한 지침. 1998. ISPM Pub. No.6, FAO
개정된 국제식물보호협약. 1997. FAO
국제교역과 관련된 식물검역 원칙. 1995. ISPM Pub. No.1, FAO

용어 정의 및 약어

제한 (Containment)

어떤 병해충의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감염 지역 내 및 주위에 식물위생 조치를 적용하는 것(FAO, 1995)

박 멸 (Eradication)

어떤 지역에서 어떤 병해충을 제거하기 위해 식물위생 조치를 적용하는 것 (FAO, 1990; 개정된 FAO, 1995; 이전의 Eradicate)

의도된 사용목적(Intended use)

식물, 식물성 산물 또는 기타 규제물품이 수입, 생산 또는 사용 시 신고된 목적 (ISPM Pub. No. 16, 2002)

공적 방제(Official control)

검역병해충의 제한(containment)이나 박멸(eradication)을 목적으로 또는 규제비검역병해충의 관리(management)를 목적으로 한 강제적인 식물위생 규정의 능동적인 시행 및 강제적인 식물위생 절차의 적용(ICPM, 2001)

경 로 (Pathway)

어떤 병해충의 유입 또는 전파 수단(FAO, 1990; 개정된 FAO, 1995)

병해충(Pest)

식물이나 식물성 산물에 해로운 식물, 동물 또는 식물병원체의 종, 계통 또는 생태형(FAO, 1990; 개정된 FAO, 1995; IPPC, 1997)

병해충위험분석 (Pest risk analysis)

어떤 병해충이 규제되어야 하는지의 여부 및 그 병해충에 대해 취해질 식물위생조치의 강도를 결정하기 위해 생물학적 및 여타의 과학적·경제적 증거를 평가하는 절차(FAO, 1995; 개정된 IPPC, 1997)

식물위생조치(Phytosanitary action)

검사, 시험, 조사 또는 소독처리와 같이 식물위생규정이나 절차의 적용을 위해 행해지는 공식적인 활동(ICPM, 2001)

식물위생조치 (Phytosanitary measure)(합의된 해석)

병해충의 도입 및/또는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법령, 규정, 또는 공식적인 절차(FAO, 1995; 개정된 IPPC, 1997; ISC, 2001)

식물위생규정(Phytosanitary regulation)

식물위생증명절차의 설정을 포함하여, 검역병해충의 유입 및/또는 확산을 방지하거나, 규제비검역병해충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제한하기 위한 공식적인 규정(FAO, 1990; 개정된 FAO, 1995; CEPM, 1999; ICPM, 2001)

식 물 (Plants)

종자 및 생식질을 포함한, 살아있는 식물체 및 그 일부(FAO, 1990; 개정된 IPPC, 1997)

식재(이식 포함)(Planting[including replanting])

식물체를 배양체에 옮기거나 접목 등을 통해 이후의 성장, 번식 또는 증식을 가능하게 하는 조작(FAO, 1990; CEPM, 1999)

재식용 식물(Plants for planting)

식재된 상태로 유지, 식재 또는 이식을 목적으로 하는 식물(FAO, 1990)

검역병해충(Quarantine pest)

그로 인하여 위협을 받고 있는 지역에 잠재적인 경제적 중요성이 있으며, 그곳에 아직 존재하지 않거나 널리 분포하지 않으며 공식적으로 방제되고 있는 병해충(FAO, 1990; 개정된 FAO, 1995; IPPC, 1997)

규제지역(Regulated area)

식물, 식물성 산물 및 기타 규제물품에 대해 검역병해충의 유입 및/또는 확산을 방지하거나 규제비검역병해충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 식물위생 규정이나 절차가 적용되는 지역(CEPM, 1996; CEPM, 1999; ICPM, 2001)

규제비검역병해충(Regulated non-quarantine pest)

재식용 식물에 존재할 경우, 해당 식물의 원래의 사용목적에 허용할 수 없는 수준의 경제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입체약국의 영토 내에서 규제되는 비검역병해충(IPPC, 1997)

RNPQ

규제비검역병해충(ISPM, Pub. No.16, 2002)

억 제 (Suppression)

병해충 집단을 줄이기 위해 감염 지역에서 식물위생 조치를 적용하는 것(FAO, 1995; 개정된 CEPM, 1999)

요건의 개요

검역병해충이 아닌 병해충도 재식용 식물에 존재할 경우 경제적으로 허용할 수 없는 수준의 영향을 준다면 식물위생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정된 IPPC 협약문(1997)에서는 이들을 규제비검역병해충(RNQP)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몇몇 조항에서 규제비검역병해충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규제대상 병해충으로서의 규제비검역병해충과 검역병해충의 차이는 병해충 발생 상태, 존재여부, 경로/상품, 경제적 영향 및 공적방제의 유형에 의해 구분할 수 있다. 개정된 IPPC 협약(1997) 제Ⅵ.2항에서는 "체약당사국은 비규제병해충에 대해서는 식물위생조치를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규제비검역병해충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기술적 정당성, 위험분석, 위험관리, 최소한의 영향, 동등성, 비차별 및 투명성에 대한 원칙을 따른다. 규제비검역병해충의 정의에 포함된 각각의 요소는 구체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규제비검역병해충에 대해 적용될 요건을 정하기 위해서는 기주-병해충 관계, 식물위생 증명에 적합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비-식물위생증명(non-phytosanitary certification) 프로그램, 허용치 및 불이행에 대한 조치 모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일반 요건

1. 배경

검역병해충이 아닌 병해충도 재식용 식물에 존재할 경우 해당 식물의 의도된 사용 목적과 관련하여, 허용할 수 없는 수준의 경제적 영향을 준다면 식물위생조치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병해충은 규제비검역병해충(RNQP)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입국 내에 존재하며, 널리 분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국가 내에서 생산되는 재식용 식물을 이러한 병해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공적방제가 적용되는 경우, 동일한 의도된 사용목적으로 수입된 같은 종류의 재식용 식물에 존재하는 이러한 병해충에 대해서도 동일하거나 동등한 식물위생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2. 규제비검역병해충과 관련된 IPPC 협약문의 조항

개정된 IPPC 협약문의 제Ⅱ조에 나타난 정의 및 규제병해충과의 비교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규제비검역병해충과 관련된다.

제Ⅶ조 1항

영토 내로 규제병해충의 유입 및/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약국들은 적용 가능한 국제 협약에 따라 식물, 식물성 산물 및 기타 규제물품의 반입을 규제할 주권을 갖는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a) 식물위생조치를 제정 및 채택...
b) 반입거부, 보류 또는 소독처리 요구, 폐기 또는 제거...
c) 규제병해충의 이동을 금지 또는 제한 ...

제Ⅵ조 1항

체약국들은 검역병해충 및 규제비검역병해충에 대해 식물위생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a) 수입체약국의 영토 내에 존재하는 같은 종류의 병해충에 대해 적용되는 조치보다 엄격하지 않으며;
b) 식물의 건강 및/또는 사용목적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며 관련된 체약국에 의해 기술적 정당성이 인정 될 수 있는 경우에 제한된다.

제Ⅵ조 2항

체약국들은 비규제병해충에 대해 식물위생조치를 요구해서는 안된다.

제Ⅳ조 3항

각 체약국들은 최선을 다하여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하여야 한다.

a) 규제병해충과 그들의 예방 및 방제 수단과 관련한 체약국 영토내의 정보 배포...

제Ⅶ조 2i항

체약국들은 최선을 다하여, 규제병해충의 목록을 학명으로 작성 및 갱신하고, 이러한 목록을 (식물위생조치 위원회)사무국, 소속 지역식물보호기구 및 이를 요청하는 다른 체약국들에 제공해야 한다.

부록 : 식물위생 증명서 양식의 기재문

이것은 상기 기술된 식물, 식물성 산물 또는 여타의 규제물품이 적절한 공식절차에 따라서 검사 및/또는 시험되어, 수입국이 정한 검역병해충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규제비검역병해충에 대한 식물검역요건을 포함한 수입국의 현행 식물검역규정과 부합됨을 증명한다.

다른 병해충들도 실질적으로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선택문안)

3. 규제비검역병해충과 다른 병해충과의 비교

3.1 검역병해충과의 비교

검역병해충과 규제비검역병해충은 그들을 정의하는데 사용된 다음의 네 가지 요소에 근거하여 비교될 수 있다 : 수입국에서의 병해충 발생 상태, 경로/상품, 해당 병해충과 관련된 경제적 영향, 공적방제의 적용

아래의 표는 이와 같은 차이를 요약하여 나타내고 있다.

검역병해충과 규제비검역병해충의 비교

정의 기준	검역병해충	규제비검역병해충
병해충 발생상태	존재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분포	존재, 넓게 분포하는 경우도 있음
경로	모든 경로에 대해서 식물위생조치 적용	재식용 식물에 대해서만 식물위생 조치 적용
경제적 영향	영향이 예측되어 있음	영향이 알려져 있음
공적방제	존재할 경우, 박멸 또는 제한(containment)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적방제 시행 중	억제(suppression)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된 재식용 식물에 대해 공적방제 시행 중

3.1.1 병해충 발생상태

검역병해충의 경우, 식물위생조치는 유입가능성을 낮추거나, 또는 이미 존재하는 병해충인 경우에는 확산 가능성을 낮추는데 초점을 두게 된다. 이것은 검역병해충의 경우, 병해충이 존재하지 않거나 새로운 지역으로의 침입이 방지되고 있으며, 발생지역에서 공적 방제를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규제비검역병해충의 경우에는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넓게 분포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많기 때문에 유입가능성은 적절한 기준이 아니다.

3.1.2 경로

검역병해충에 대한 식물위생 규정 및 절차는 모든 기주나 경로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다. 규제비검역병해충의 경우에는 특정한 의도된 사용목적을 위한 특정 기주로서의 재식용 식물에 대해서만 규제할 수 있다.

3.1.3 경제적 영향

경제적 영향과 관련하여 검역병해충과 규제비검역병해충의 정의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는, 검역병해충의 경제적 영향은 잠재적인 것이지만 규제비검역병해충의 경제적 영향은 허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이다. 규제비검역병해충은 국가 내에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영향에 대한 직접적인 상세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 내에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검역병해충처럼 영향이 예측되기보다는 영향이 이미 알려져 있게 된다. 또한 검역병해충과 관련된 잠재적인 경제적 중요성에서는 다른 국가에 대한 시장 접근 및 환경영향과 같은 요인에 대한 검토가 포함될 수 있으나, 규제비검역병해충의 경우에는 주로 정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이 관련되지 않는다.

3.1.4 공적방제

모든 규제병해충은 공적방제의 대상이 된다. 어떤 지역에 검역병해충이 존재하는 경우, 이들을 박멸 및/또는 제한하기 위한 식물위생조치의 형태로 공적방제를 받는다. 규제비검역병해충의 경우에는 특정 재식용 식물에서 이들을 억제하기 위한 식물위생조치의 형태로 공적방제를 받는다.

3.2 비규제 병해충과의 비교

검역병해충이나 규제비검역병해충이 아닌 병해충 중 일부는 식물위생 성격이 아닌(예; 상업적 또는 식품 안전 관련) 허용할 수 없는 영향(즉, 손해)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손해를 입은 식물에 대해 적용되는 조치는 식물위생조치가 아니다. 개정된 IPPC 협약 Ⅵ.2조에서는 “체약국은 비규제병해충에 대해 식물위생조치를 요구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규제비검역병해충을 정의하는 기준

규제비검역병해충에 대한 정의는 이들을 검역병해충으로부터 구분하는 기준을 제공한다. 규제비검역병해충에 대한 개념을 적절히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정의에 사용된 일부 용어에 대해 좀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4.1 “재식용 식물”

규제비검역병해충의 개념은 “재식용식물”에 적용되는 경우에만 특별히 한정된다. 식물은 “살아있는 식물체 및 종자를 포함한 그 일부분”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재식용 식물”에는 종자, 구근, 괴경 및 다양한 영양번식체가 포함되며, 식물체 전체 또는 일부(삽수와 같은 경우)가 될 수 있다.

재식용 식물에는 “식재된 상태로 유지되는 식물”이 포함되기 때문에, 화분에 심겨진 식물(분재 포함)도 해당된다. 식재된 상태로 유지되는 식물과 관련된 위험은 증식용 식물에 관련된 위험보다 적을 것이다.

4.2 “의도된 사용목적”

재식용 식물의 의도된 사용목적에는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 다른 분류군의 상품(예; 과일, 절화, 목재, 곡물 등)을 직접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재배
- 식재된 상태로 유지(예; 관상식물)
- 같은 종류의 재식용 식물 개체수를 증가(예; 괴경, 삽수, 종자)

허용할 수 없는 경제적 영향에 대한 위험은 병해충, 상품, 의도된 사용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기술적으로 정당할 경우, 상업적 용도(판매 또는 판매의도) 및 비상업적 용도(개인용 소량의 재식용 식물에 제한, 판매용은 제외)로 구분할 수 있다.

4.3 “이러한 식물”

“이러한 식물”이란 의도된 사용목적을 위해, 수입되었거나 국내에서 생산된 특정 재식용 식물(종, 품종 등) 중 규제비검역병해충과 관련하여 수입국에 의해 규제를 받는 식물을 말한다.

4.4 “경제적으로 허용할 수 없는 영향”

규제비검역병해충에 대한 정의는 허용할 수 없는 경제적 영향과 관련된다. 이것은 경제적 영향의 관점에서 손실정도를 측정하여, 허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검역병해충의 경우, 경제적 영향에는 시장접근성 및 식물의 건강과 관련된 환경적 영향과 같이 직접적인 경제적 용어로 정량화 하기 어려운 영향이 포함된다. 규제비검역병해충은 이미 분포하는 병해충이기 때문에, 시장접근이나 환경보건에 새롭거나 추가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영향은 규제비검역병해충의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는데 있어 적절한 요소로 간주되지 않는다.

허용할 수 없는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는데 관련되는 요소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수확물의 양적 감소(예; 생산량 감소)
- 품질의 저하(예; 포도주용 포도의 당분 함량 감소, 시장에서의 등급 하락)
- 병해충 방제 시 추가적인 비용(예; 솎아내기, 농약 살포)
- 수확 및 취급 시 추가적인 비용(예; 추려내기)
- 보식(replanting) 비용(예; 식물의 수명 감소에 따른 손실)
- 대체작물 재배 필요성에 따른 손실(예; 동일하거나 다른 작물의 수확량이 적은 저항성 품종을 파종할 필요성 때문에)

특정한 경우, 생산장소에서 다른 기주식물에 대한 병해충의 영향이 관련 요소로 간주될 수 있다.

4.5 "규제되는"

규제비검역병해충의 정의에서 "규제되는"이라는 용어는 공적방제와 관련된다. 규제비검역병해충에 대한 공적방제 프로그램은 국가, 국가 이하의 단위 또는 지역적 단위에 적용될 수 있다(용어집 부속서 No.1: 규제병해충에 대한 공적방제 개념의 적용 및 해석에 대한 지침, 2001. 참조).

5. 관련 원칙 및 의무

규제비검역병해충 개념의 적용은 특히, 기술적 정당성, 위험분석, 위험관리, 최소한의 영향, 동등성, 비차별 및 투명성의 원칙과 의무에 따른다.

5.1 기술적 정당성

규제비검역병해충에 대한 식물위생조치는 IPPC(1997)에서 요구되는 바와 같이, 기술적으로 정당해야 한다. 어떤 병해충을 규제비검역병해충으로 구분하고, 이와 관련된 식물 종류의 수입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병해충 위험분석을 통해 기술적으로 정당하여야 한다.

5.2 위험평가

규제비검역병해충에 대한 병해충 위험평가에서는 정착가능성과 장기적인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잠재적인 검역병해충에 대한 병해충 위험평가와는 다르다. 그러나 해당 재식용 식물이 병해충의 유입 경로이며, 허용할 수 없는 경제적 영향을 주는 주된 감염원이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5.3 위험관리, 최소한의 영향 및 동등성

규제비검역병해충으로 인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위험평가를 통해서 나타난 경제적 영향이 “허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인지에 대해 판단하여야 한다.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의 강도는 비차별, 위험관리, 최소한의 영향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적절한 경우 동등한 조치를 허용하여야 한다.

5.4 비차별

규제비검역병해충에 대한 식물위생조치는 국가 간 및 국내산과 수입화물 간 비차별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어떤 병해충이 규제비검역병해충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체약국의 영토 내에서 그 병해충에 대해 공적방제가 적용되어, 의도된 사용목적이 동일한 재식용 식물(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주식물종)은 원산지에 관계없이, 그 병해충이 존재하거나 허용치 이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만 판매나 식재가 금지되어야만 한다. 수입 화물에 존재하는 병해충은, 그 병해충에 대해 공적방제가 시행되는 수입국의 영토 내 또는 수입국 영토의 일부에서 판매되거나 식재 될 경우에만 규제비검역병해충으로 간주될 수 있다.

5.5 투명성

규제비검역병해충에 대한 공적방제 프로그램의 세부사항이 기재된 국가 규정 및 요건은 공표되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체약국(제Ⅶ조 2b항)에 전달되어야 한다. 어떤 병해충을 규제비검역병해충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한 기술적 정당성 및 규제비검역병해충에 적용된 조치의 강도에 대한 정당성은 수입 체약국 및 이를 요청하는 기타 체약국에 제공(제Ⅶ조 2c항)될 수 있어야 한다.

6. 적용

국가식물보호기관이 어떤 병해충을 규제비검역병해충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 위에서 제시된 요인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주-병해충 관계 및 재식용 식물에 대한 증명프로그램(예; 종자 증명 seed certification)과 같은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

6.1 기주-병해충 관계

규제비검역병해충은 특정한 기주(들)와 관련하여 정의되어야 한다. 이는 같은 병해충이라 할 지라도 기주가 다를 경우에는 규제비검역병해충으로 규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바이러스는 한 종류의 재식용 식물에 대해 허용할 수 없는 경제적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다른 종류의 식물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뒷받침 할 수 있는 기주-병해충 관계에 대한 정보(예; 품종에 따른 저항성/감수성, 병해충의 가해능력)가 이용 가능하다면, 규제비검역병해충에 대한 식물위생 요건이 적용되는 특정한 분류학적 단계가 구분되어야 한다.

6.2 증명 계획[1)]

재식용 식물에 대한 증명 프로그램(때때로 "증명계획(certification scheme)"으로 불려짐)에서는 품종의 단일성, 색, 크기 등과 같이 식물위생과 관련 없는 요건 이외에도, 병해충에 대한 특정 요건을 포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기술적으로 정당하며 동 증명프로그램이 의무적 성격을 갖고 있어 공적방제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 즉 적절한 법률적 권한 하에서 정부나 국가식물보호기관에 의해 설립 또는 승인되는 경우, 관련 병해충은 규제비검역병해충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증명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병해충은 관련작물에 허용할 수 없는 경제적 영향을 주고, 주로 재식용 식물에 의해 전파되기 때문에 규제비검역병해충으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증명 프로그램에 언급된 모든 병해충이 규제비검역병해충일 필요는 없다. 특히, 기존의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병해충 및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기술적 정당성이 증명되지 않은 허용치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

1) 여기서의 증명은 식물위생증명과 혼동되지 않는다.

6.3 허용치

규제비검역병해충 개념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적방제 프로그램과 이에 따른 수입 요건에서 규제비검역병해충에 대한 적절한 허용치를 설정 및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허용치의 수준은 기술적 정당성에 의존하며, 특히 위험관리, 비차별 및 최소한의 영향 원칙에 따른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기술적으로 정당할 경우, 샘플링 및 시험절차에 근거하여 허용치가 0(zero)이 될 수 있다.

6.4 불이행시의 조치

규제비검역병해충에 대한 식물위생 요건의 불이행 시 취해지는 식물위생 조치는 비차별 및 최소한의 영향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대안이 포함 될 수 있다.

- 등급 격하(상품 분류나 의도된 사용목적의 변경)
- 소독처리
- 다른 용도으로 전환(예; 가공)
- 원산지나 다른 국가로 반송
- 폐기